제33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

1. 회의일시 : 2010. 6. 7.(월) 10:30

2. 장 소 : 방송통신위원회 14층 회의실

3. 참석위원 : 최시중 위 원 장

이경자 부위원장

송도균 위 원

형태근 위 원 (4인)

4. 불참위원 : 없 음

5. 회의내용

가. 성원보고

나. 국민의례

다. 개회선언

라. 회의공개여부 결정

마. 전차회의록 확인

바. 의결사항

1) 방송발전기금관리위원회 위원 임기 연장에 관한 건 - (2010-33-129)

- o 최재유 융합정책관의 보고를 받고, '10. 6. 30일자로 임기가 만료되는 제5기 방송발전 기금관리위원회 위원 임기를 원안대로 '10. 12. 31일까지 연장하기로 의결함.
 - ※「방송통신발전 기본법」제27조에 의거, '11. 1. 1일부터 '방송발전기금관리위원회'가 '방송통신 발전기금운용심의회'로 개편될 예정임에 따라, 현 방송발전기금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'10. 7. 1일부터 '10. 12. 31일까지 연장

2) **협찬고지 위반사업자 과태료 처분에 관한 건** - 한국방송공사 등 5개사 - (2010-33-130~140)

o 정한근 방송진흥기획관의 보고를 받고, 「방송법」제74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협찬고지를 한 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(안)을 추가 검토 후 재논의하기로 하고 의결을 보류함.

3) 2010년 지상파방송사업 재허가 기본계획(안)에 관한 건 - (2010-33-141)

o 김준상 방송정책국장의 보고를 받고, '10년 12월에 방송국 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한국방송공사 등 43개사(330개 방송국)에 대한 재허가 기본계획(안)을 향후 추가 검토 후 재논의하기로 하고 의결을 보류함.

4)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에 관한 건 - (주)티브로드강서방송 등 23개사 - (2010-33-142)

- o 김준상 방송정책국장의 보고를 받고, 「방송법」제17조에 의거, '10. 6. 10일 ~ 9. 9일 중 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되는 ㈜티브로드강서방송 등 23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재허가 신청 건에 대해 원안대로 조건을 부과하여 재허가하기로 의결함.
- o 주요 내용
 - ① 재허가 기간
 - ㈜티브로드강서방송 등 22개사의 허가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며, ㈜한국케이블TV 포항방송의 허가유효기간은 3년으로 함.
 - ※ ㈜한국케이블TV포항방송의 경우, 재무구조 변동 상황과 사업자의 재정 능력을 재검증하여 차기 재허가 심사시 반영할 수 있도록, 허가유효기간을 최대한 단축하여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심사위원회 의견을 반영

② 재허가 조건

사업자명	재허가 조건 내용
공 통 (23개사)	○ 연간 총 방송수신료의 25%이상을 PP 프로그램 사용료로 지급하여야 한다.
	○ 매반기 별 PP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현황을 다음 반기 시작후 15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공 통 (MSO계열 19개사)	○ PP 프로그램 사용료를 지급함에 있어 합리적인 지급기준을 마련하고, 특수관계에 있는 계열PP와 그러하지 아니한 PP를 부당하게 차별하여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서는 아니된다.
㈜큐릭스서대문방송 ㈜큐릭스종로중구방송 ㈜큐릭스대경방송	○ 2011년 12월 31일까지 방송사업자가 아닌 특수관계자(큐릭스홀딩스)에게 제 공한 대여금을 상환받아야 하며, 재허가 이후에도 대여, 담보제공, 지급보증을 하여서는 아니된다.
㈜한국케이블TV 포항방송	○ 조선아이앤씨와 체결한 경영권 매각 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2010년 9월 25일까지 전액상환하고 주권을 반환받아야 하며, 매월 말일까지 이행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.
	○ 부채비율 축소 등 재무구조 개선을 위하여 제출한 경영개선 계획서를 이행 하여야 한다.
㈜티씨엔대구방송	○ 감사 선임 개선 등 경영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서를 이행 하여야 한다.

사.기 타

1) 차기 회의 일정에 관한 사항

o 차기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는 '10. 6. 10.(목) 10:00에 개최하기로 함.

6. 폐 회 (12:10)

※ 11:55 정회, 12:00 속개